

『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 의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(性比) 규정 명시(안 제6조제4항).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따른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함(안 제11조제1항)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제16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6조제4항에 “위촉위원은 여성이 100분의 40 이상 구성되도록”을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”으로 개정하여,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(性比) 규정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11조제1항에서 멀티미디어 산업발전 등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「여성발전기본법」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성비 규정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